

■ 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 2의5] <개정 2024. 7. 4.>

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(제3조의6 관련)

1. 절수등급: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수도꼭지. 다만,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.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.

| 절수등급   | 1등급    | 2등급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최대토수유량 | 5리터 이하 | 6리터 이하 |

나. 변기

1) 대변기

| 절수등급 | 1등급    | 2등급    | 3등급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사용수량 | 4리터 이하 | 5리터 이하 | 6리터 이하 |

2) 대·소변 구분형 대변기

| 절수등급   | 1등급    | 2등급    | 3등급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평균사용수량 | 4리터 이하 | 5리터 이하 | 6리터 이하 |

3) 소변기

| 절수등급 | 1등급      | 2등급    | 3등급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사용수량 | 0.6리터 이하 | 1리터 이하 | 2리터 이하 |

2. 절수등급의 표시

가. 제1호에 따른 최대토수유량,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별표 1 비고 제4호,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토수유량,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별표 1 비고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 표시를 한 수도꼭지 모델(이하 "기존모델"이라 한다)과 같은 용도로서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기존모델과 같거나 적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기존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도꼭지 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.

나. 표시정보

1) 절수등급

2) 최대토수유량,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

### 3) 제품구분, 업체명, 모델명 및 검사기관

(예시 1) 1등급(수도꼭지) (예시 2) 우수등급(수도꼭지) (예시 3) 1등급(변기)



#### 다. 표시방법

- 1) 배색 비율은 청색(C100+M29+Y0+K13)을 원칙으로 하되, 청색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.
- 2)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.
- 3)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